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상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31.

발 의 자 : 곽상언 · 이개호 · 김교홍
김동아 · 조승래 · 박수현
조정식 · 김태선 · 윤준병
안태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,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치료 지원을 수행하는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방보건의를 소방본부에 두도록 하되, 프로그램 운영을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방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상담 · 검사 · 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임.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등 불안정성이 큰 상황임.

이에 소방청장과 시 · 도지사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 · 검사 · 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

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 신설).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) ①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정신건강증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정신건강 상담·검사·진료비용 지원
2. 정신질환 예방·치료·재활 프로그램 운영
3.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
4.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
5.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2(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) ①</u> <u>소방청장 또는 시 · 도지사는</u> <u>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</u> <u>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정신건강증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도록</u> <u>노력하여야 한다.</u> <u>1. 정신건강 상담 · 검사 · 진료</u> <u> 비용 지원</u> <u>2. 정신질환 예방 · 치료 · 재활</u> <u> 프로그램 운영</u> <u>3.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</u> <u>4.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</u> <u>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</u> <u> 해소</u> <u>5.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 ·</u> <u> 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</u> <u>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</u> <u> 고 인정하는 사업</u> <u>② 소방청장 또는 시 · 도지사</u> <u> 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</u> <u> 또는 일부를 제10조제2항에 따</u>

	<u>큰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